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 정 2017.03.23 개 정 2020.03.26 개 정 2021.04.30 개 정 2022.08.30 (기획예산부, 042-600-815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 위원회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공사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 내용을 따른다. <개정 2021.04.30>
 - ② 이 규정은 사장, 감사, 비상임이사(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25조제3항제2호에 의하여 선임된 노동이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8.30>
- 제3조(구성) ①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인해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30>
 - ②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퇴임 또는 퇴임예정인 임원이 여러 명이며, 각 임원의 퇴임 및 퇴임예정시기가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위원 수는 5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3인
 - 2.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 2인(정관 제21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자 제외)
 - ④ 외부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공사 직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⑤ 제4항의 공사 직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1인은 공사 직원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가 선임한다. 다만, 추천절차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자를 선임 할 수 있다.
 - ⑥ 제3항제2호의 외부위원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8.30>
 - ⑦ 공사 임직원(비상임이사 제외)과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은 제외)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⑧ 이사회는 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보자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 관련학계·단체, 비상임이사의 추천과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⑨ 위원회 위원은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되, 성별·지역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26> ⑩ 위원회는 추천한 후보자가 최종 선임됨과 동시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03.26.>
- 제4조(위원장 및 의결 방법)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권한)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원후보자의 모집방법 결정
- 2. 임원후보자의 조사 또는 그 조사의 의뢰
- 3. 임원후보로 응모한 자 및 위원회가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 받은 자에 대한 심사
- 4. 임원후보로 추천할 자의 결정
- 5. 사장후보로 추천될 자와 경영계약안 협의
- 6. 기타 법령·정관으로 정한 사항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임원후보자의 모집)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자 모집 시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 중에서 모집방법을 결정한다. 다만, 사장후보자 모집에 있어서는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②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그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인사혁신처 및 기획재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추천방식에 의해 임원후보자를 모집할 경우, 제7항에서 규정한 전문기관과 관련학계 및 단체, 인사혁신처(국가인재 DB), 위원회 위원의 추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⑤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으로 임원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결원 예정 직위수의 2배수가 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① 위원회는 인재채용 · 인재추천 · 인사컨설팅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후보 의 모집 · 조사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제출서류) 임원후보자로 추천되거나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원서(별표 1)
- 2. 자기소개서(별표 2)
- 3. 직무수행계획서(별표 3)
- 4. 그 밖에 후보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8조(제출서류 반환) 제8조에서 명시된 제출서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른다.

제9조(이사 및 감사의 자격) ① 비상임이사는 경제, 경영,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1.04.30>

- 1. 후보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공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 2. 후보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공사와 중요한 거래관계(대부관계 제외)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 3. 후보추천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거나 최근 6개월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단, 교육공무원 제외)
-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사장과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경영능력이 있는 자로 선임하되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장이 될 수 없으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1.04.30>
- ③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시기의 임원후보자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04.30>
- ③ 이사가 제1항 각호의 1(상임이사는 제1항 제1호 제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 경우 퇴직한 이사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3.23.]

제9조의2(감사 자격의 특례) 감사의 경우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04.30>

-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고등교육법」제2조제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희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의 지 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공사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정당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
- 제9조의3(노동이사의 자격) ① 제2조제2항의 노동이사는 공사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자로 한다.
 - ②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
 -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 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본조신설 2022.8.30]
- 제9조의4(노동이사 후보자 추천) ① 근로자 대표는 2명의 임원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8.30]
- 제9조의5(임원추천위원회 제척)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본조신설 2022.8.30]
- 제9조의6(위임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노동이사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8.30]
- 제10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고려하여 직위별 임원후보자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을 결정한다. 심사기준은 별표4부터 별표6까지와 같으며 심사평가표는 별표7부터 별표12 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 ② 사장 후보자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경우 고려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 2.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 3.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 4.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 5. 기타 공사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 ③ 감사 후보자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경우 고려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직관리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
- 2.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 3. 해당 분야의 업무 이해도
- 4. 기타 공사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 ④ 비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경우 고려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 2.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 3. 기타 공사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 제11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응모자·추천된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직위별 특성을 고려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로 응모한 자에 대해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면접심사 대상자 수를 결정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한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 ④ 서류 및 면접심사 시 응모자에 대한 평가점수는 위원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로 결정한다.
 - ⑤ 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의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
 - ⑥ 위원회는 추천방식에 의해 모집된 응모자에 대해서도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응모한 자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심사한다.
- 제12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 모집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 개인의 인적사항, 사생활 정보 등 심사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 (위원의 제착·회피·기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척된다.
 - 1. 응모자 및 추천된 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 2.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속한 기관과 자문 · 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경우
 - 3. 기타 응모자 및 추천된 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평가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8.30>
 -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평가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 또는 회피한 위원으로 인한 결원의 발생으로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제척 또는 회피한 위원을 대체할 다른 위원의 선임을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 ⑤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2.8.30>

- 제13조2(위원의 해촉) 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8.30>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4조(후보자 추천) ① 위원회는 3배수 내지 5배수로 임원후보자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없이 추천하되, 직위 특성, 대상 직위 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 추천할 수 있다.
 - ② 임기 만료를 사유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임원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 해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되지 않아 임원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공개모집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와 협의해 후보자 추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04.30>
 - ③ 제1항에 따른 사장 및 감사 및 비상임이사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소속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이 경우 임원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후보자 추천서(별표 13)와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별표 14)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가 비상임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기존 비상임이사와 성별, 출신지역 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가 응모자추천된 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제5항에 의하여 후보자 모집절차를 다시 실시하였음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이때 후보자 직접 추천방법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15조(경영계약안 협의) ① 위원회는 사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경영계약 안에 대하여 사장 후보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사장 후보자와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 제16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 경위와 그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② 회의록은 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나, 경영상 기밀이나, 후보자 개인의 신상 및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명단, 개인별 평가표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임원선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②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 2. 위원회의 소집 및 심사결과 처리
- 3. 기타 위원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위원회 활동지원) ① 공사는 위원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1. 위원회 참석수당
- 2.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 ② 제1항 각 호에 의한 경비의 지급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기타)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사규의 개폐)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지 원 서

공모 직위명							응모번호			※ 기	※ 기재 불요				
			성 명		명	[한글] [한자			[9			명문]			
	사진부착		인		샏	년월	일일								
(3.50	cm x 4.5cm	1)		적 사	주	소									
최근	· 6개월 이니	H		항	등록기 (본	기준: 적)	※ 후보자에 대해 신원조			회시 활	용 함				
					전	화	[자 ^년 [직) –) –		휴 대 폰			E-mail	
							•								
		5	기 간				학교명 2		전 공		소재	지	학 위		
	년 월 ~ 년 1			월			:	고등학교							
학 력 사	년	월	~	년	월				대학교			학			
항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u>ያ</u> :	학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를 :	학			
병역	병 역	병 역 필, 병역특례,				,	면제 (면제시	사유 :)	
사항	군 별				٦ ·	급			복무기점	<u>"</u>	년 월	일	! ~ 년	월 일	(년 개월)
		종 류					취득년월일 외=		외=	국어명 점 수			검정기관		
자격															
사석 및 면허									_						

경	력	ス	卜핫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년월 기재)	퇴사사유
				~	
				~	
				~	
				~	
				~	
				~	

□ 관련분야 논문발표 (중요도 순 작성)

구 분	제 목	게재년월	게재기관
논 문			
기타			

[※] 주요사항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중요도 순 작성)

과제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관련분야 국가발전 기여 업적
] 기타 업적 및 활동 사항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자 기 소 개 서

**	및 현재까지 달성한 경력 및 업적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분량 : A4용지 5매 내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공사 운영방침 및 경영혁신 계획을 포함하여 주요
	사업계획,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분량 : A4용지 5매 내외)

사장 후보자 심사 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1.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지향적인 의지○ 회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능력
2.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 가스 또는 에너지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가스 또는 에너지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도○ 가스산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3.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 조직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및 역량결집 능력 ○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 및 조정하는 능력 ○ 노사화합 및 기업의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4.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 공직자로서의 청렴성, 도덕성, 준법성 보유 및 실천의지○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사장으로서 갖춰야 할 종합적인 인품
5. 기타 공사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 천연가스 설비유지 보수분야에 관한 이해 정도 ○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이해 정도

감사 후보자 심사 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1. 조직관리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	 ○ 감사업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 감사기능 활성화, 청렴도 제고 등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감사전략 ○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 감사방향 설정 능력 ○ 대내외 감사환경을 감안한 감사기능 제고 능력
2.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 공직자로서의 청렴성, 도덕성, 준법성 보유 및 실천의지○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감사로서 갖추어야 할 종합적인 인품
3. 해당 분야의 업무이해도	○ 가스 또는 에너지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가스 또는 에너지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도○ 가스산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4. 기타 공사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보유 여부 및 의지○ 경영합리화를 위한 비효율 분야 제도개선 능력 및 의지

비상임이사 후보자 심사 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1.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 경영·회계·예산 등 회사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해 ○ 회사 경영에 대한 건설적 대안 제시능력 및 경험 ○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능동적 비전 제시 및 대응 능력 ○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합리적 정책결정 능력
2.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 공직자로서의 청렴성, 도덕성, 준법성 보유 및 실천의지○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비상임이사로서 갖추어야 할 종합적인 인품
3. 기타 공사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 가스 또는 에너지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 가스 또는 에너지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도 ○ 가스산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사장 후보자 서류심사 평가표

지원자 성명:

		평 가 점 수				
평 가 요 소	배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20)	(18)	(16)	(14)	(12)
1.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능력	20점					
2.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20점					
3.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20점					
4.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20점					
5. 기타 공사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20점					
합계	100점					
평가(합계)점수 순위						

※ 평가방법

- ① 평가점수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를 합산하여 기재
- ② 지원자별 평가(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고, 평가(합계)점수란에 순위를 기재

년 월 일

사장 후보자 면접심사 평가표

지원자 성명 :

		평가점수				
평 가 요 소	배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20)	(18)	(16)	(14)	(12)
1.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능력	20점					
2. 해당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20점					
3.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20점					
4.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20점					
5. 기타 공사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20점					
합 계	100점					
평가(합계)점수 순위						

※ 평가방법

- ① 평가점수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를 합산하여 기재
- ② 지원자별 평가(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고, 평가(합계)점수란에 순위를 기재

년 월 일

감사 후보자 서류심사 평가표

지원자 성명:

			Ŋ	경 가 점	수	
평 가 요 소	배 점	탁월 (30) (20)	우수 (27) (18)	보통 (24) (16)	미흡 (21) (14)	저조 (18) (12)
1. 조직관리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	30점					
2.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30점					
3. 해당 분야의 업무 이해도	20점					
4. 기타 공사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20점					
합 계	100점					
평가(합계)점수 순위						

※ 평가방법

- ① 평가점수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를 합산하여 기재
- ② 지원자별 평가(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고, 평가(합계)점수란에 순위를 기재

년 월 일

감사 후보자 면접심사 평가표

지원자 성명:

		평 가 점 수				
평 가 요 소	배 점	탁월 (30) (20)	우수 (27) (18)	보통 (24) (16)	미흡 (21) (14)	저조 (18) (12)
1. 조직관리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	30점					
2.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30점					
3. 해당 분야의 업무 이해도	20점					
4. 기타 공사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20점					
합 계	100점					
평가(합계)점수 순위						

※ 평가방법

- ① 평가점수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를 합산하여 기재
- ② 지원자별 평가(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고, 평가(합계)점수란에 순위를 기재

년 월 일

비상임이사 후보자 서류심사 평가표

지원자 성명 :

		평 가 점 수				
평 가 요 소	배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40) (30)	(36) (27)	(32) (24)	(28) (21)	(24) (18)
1.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40점					
2.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30점					
3. 기타 공사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30점					
합 계	100점					
평가(합계)점수 순위						

※ 평가방법

- ① 평가점수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를 합산하여 기재
- ② 지원자별 평가(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고, 평가(합계)점수란에 순위를 기재

년 월 일

(별표 12)

비상임이사 후보자 면접심사 평가표

지원자 성명 :

		평 가 점 수				
평 가 요 소	배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저조
		(40) (30)	(36) (27)	(32) (24)	(28) (21)	(24) (18)
1.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40점					
2.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30점					
3. 기타 공사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30점					
합 계	100점					
평가(합계)점수 순위						

※ 평가방법

- ① 평가점수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를 합산하여 기재
- ② 지원자별 평가(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고, 평가(합계)점수란에 순위를 기재

년 월 일

후보자 추천서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 직위 후보자를 복수추천하기로 의결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비고

^{*} 작성은 성명 가나다순

(별첨 1 : 추천 후보자 인적사항, 별첨 2 : 세부 추천사유)

20 년 월 일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서 명)

위 원 ○○○ (서 명)

[별첨 1] 추천후보자 인적사항(기관장)

성 명	출 생	학 력	주 요 경 력
000	강원 60.3.10	·○○고(75) ·○○대 ○○학(78) ·○○대 ○○학석사(84) ·○○대 ○○학박사(88)	 ※최근 경력부터 4~5개 기재 ·○○○○○(07~현재) ·○○○○○(05~02) ·○○○○○○(02~00) ·○○○○○○(96~93) ·○○○○○○(93~87)
000	경북 52.3.4		
〇〇〇 (女)	서울 58.9.4		

〈 참고 〉

- * 출생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재(예 : 강원, 서울)
- * 생년월일은 예(50.6.25)에 따라 기재
- * 여성의 경우, 성명 밑에 (女)로 표기
- *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4~5개 정도를 기재

[별첨 1] 추천후보자 인적사항(견제임원)

성 명	출 생	학 력	주 요 경 력	이해관계 유무
000	강원 60.3.10	·○○고(75) ·○○대 ○○학(78) ·○○대 ○○학석사(84) ·○○대 ○○학박사(88)	 ※최근 경력부터 4~5개 기재 ·○○○○○○(07~현재) ·○○○○○○(05~02) ·○○○○○○(02~00) ·○○○○○○(96~93) ·○○○○○○(93~87) 	무
000	경북 52.3.4			무
〇〇〇 (女)	서울 58.9.4			무

< 참고 >

- * 출생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재(예 : 강원, 서울)
- * 생년월일은 예(50.6.25)에 따라 기재
- * 여성의 경우, 성명 밑에 (女)로 표기
- *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4~5개 정도를 기재
- * 이해관계 심사 대상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제2항 해당여부
 - 갑을관계, 계약관계(금전급부가 있는 용역 등)에 있는지 또는 있었는지
 - 자기 사업에 유리하도록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 그밖에 기관의 특성 및 영위사업 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 유무를 판단
 - ※ 자문, 심의위원회 등의 위원참여는 이해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별첨 2] 세부 추천사유(후보자별 상세사유 4~5가지 이상 기재)

성 명	현 직	추천 사유
000	ㅇㅇ대 00학과 교수	* 해당직위에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설명을 기술 〈기관장의 경우〉 -(예) 학력, 경력, 저술활동 등 후보자의 특정 이력이 기관의 주요업 무와 부합하는 전문성, 공익성 등이 있는 지 -(예) 어느 면에서 기업경영과 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지 -(예) 어느 면에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는 지 -(예) 어느 면에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는 지 -(예) 후보자의 어느 분야 경력(또는 경험)이 기관의 어느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지 등 〈견제임원의 경우〉 -(예) 학력, 경력, 저술활동 등 후보자의 특정 이력이 기관의 주요 업무와 부합하는 어느 분야의 전문성, 공익성 등이 있는 지 -(예) 공공부문에서 어느 업무경험이 있는 지 -(예) 견제임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어느 경력에 근거하여 갖추 었는 지 -(예) 어떤 분야의 경력(또는 경험)이 기관의 어느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지 등
000		- - -
000		- - - -

(별표 14)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1. 선발 개요

- □ 선발 직위
 - ㅇ ㅇㅇ직위(ㅇㅇㅇ) 임기만료(17.8.7)에 따른 후임자 선발
- □ 선발방법

ㅇ 근 거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ㅇ 방 법 : 공개모집

ㅇ 모집의 세부내용

구 분	기 간	인 원	접수 기간	비고
공개모집	17.6.28~7.11 (14일간)	10명 (여성: 1명)	17.6.28~7.11 (14일간)	

□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17.6.27(월)~7.15(금)

※ 1차 : 17.6.27(월), 2차 : 7.13(수), 3차 : 7.15(금)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17.6.20(월)

ㅇ 응모자 10명중 3명을 ㅇㅇ직위 후보자로 추천

2. 모집 개요

- □ 공개모집 공고
 - ㅇ 일간지 : ㅇㅇ신문 공고(17.6.28)
 - 홈페이지 : ○○공사·○○○○부·안전행정부·기획재정부·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17.6.28~7.11)
 - ※ 접수기간 : 17.6.28~7.11까지(14일간)

3. 응시자 현황 : ㅇㅇ명 (가나다순)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요 경력	비고
1	ooo (60.8.15, 男)	·ㅇㅇ고(74) ·ㅇㅇ대 ㅇㅇ학(78) ·ㅇㅇ대 ㅇㅇ학석사(81)	※최근 경력부터 4~5개 기재 ·○○대 00학과 교수(현) ·○○도청 의회사무처장(06~05) ·○○도청 국장(00~05) ·○○도 ○○위원회 이사(98~99)	
2				
3				
4				
5				
6				
7				
8				
9				
10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총 ㅇ명)

유형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주요 경력	비고
	000	ㅇㅇㅇ공사 비상임이사	· 민평통자문회의 영천시 협의회 위원(현) · 영천군 임고농협 이사	,
비상임이사 (3명)	000	n	· 평창영월정선 축협조합장(현) · (주)농협유통 이사	-
	ooo (女)	n	· 국방연구원 비상근연구위원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
이사회추천 (2명)	000	한농연 고성군 회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현) · 한농연 고성군 회장(현)	농업계
	ooo (女)	한국소비생활 연구원장	·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현) · 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여성계